#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4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전재수·허 영·추미애

위성곤 • 이학영 • 강유정

김재원 • 이기헌 • 민형배

채현일 • 박홍배 • 민홍철

강득구 · 서삼석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 (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 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2"를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 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을 지급
	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출산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에 상
	<u>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u>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u>제한다.</u>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u>야 한다.</u>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①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u>제</u>
104조의32, 제104조의34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 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 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 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②
<u>제1</u>
04조의32, 제104조의34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	
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